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315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5. 10.

남 현 주 의원

제안 설명서

제안자: 남현주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
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관내 청소년시설에 한정하여 생리용품을 비치·지원하고 있으나, 범위를 확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에도 생리품을 비치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,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내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
□ 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**

-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에도 생리용품을 비치함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

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【남현주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5102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0.

발 의 자 : 남현주 황국주 서보영
김장관 박종길 박정환
고명욱

1. 제안이유

-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관내 청소년시설에 한정하여 생리용품을 비치·지원하고 있으나, 범위를 확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립 도서관에도 생리용품을 비치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(현행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」
- (개정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」

나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다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라. 지원내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마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전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
- 「도서관법」 제4조

나. 비용추계 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.
2. “생리용품”이란 여성이 생리할 때 발생하는 생리혈 등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.
3. “청소년시설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에 따른 시설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4. “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」 제4조제1항제2호

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내용) ①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내 청소년시설 및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규모, 방법,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홍보)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6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현황, 수요파악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관계 법령 】

□ 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,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·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, 제2항에 따른 건강·체력 기준의 설정·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·범위, 방법,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□ 도서관법

제4조(도서관의 구분) ① 도서관은 그 설립·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립 도서관: 국가가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

2. 공립 도서관: 지방자치단체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

3. 사립 도서관: 「민법」, 「상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

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공공도서관: 공중의 정보이용·독서활동·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.